

수원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나932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나9325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9. 28 선고 2022가단10160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성창재, 이진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대영

피고, 항소인 A

변론종결 2023. 5. 11.

판결선고 2023. 7. 6.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9. 28. 선고 2022가단10160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와 피고 사이에 2020. 4.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와 2020. 4. 20. 접수 제420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판결 이유1) 부분 중 “1. 인정사실”과 “2. 사해행위취소권 성립 여부” 중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항에 기재된 내용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하고,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하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쓴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D에 대하여 201,658,940원의 철물 판매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주)D 소유의 부동산에 2020. 3. 31. 가압류를 하였다가 그 집행을 해제하는 대신 B로부터 개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고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로서는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을 제1 내지 4호증(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주)D에 대하여 그 주장 상당의 철물 판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주)D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다가 그 집행을 해제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는 B가 개인사업자로서 R를 운영하기 시작한 2017년경부터 B와 거래를 하다가 2018년 12월경 (주)D이 설립된 이후에도 계속 거래를 이어온 점, ② (주)D의 주요 영업용 부동산은 이미 2020. 1. 23.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가 2020. 2. 10.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취하로 말소되었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1개월 남짓이 경과한 2020. 3. 31. (주)D의 위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위 강제경매 상황에 대하여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주)D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직후 B로부터 “(주)D 부동산을 매각하려 하니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개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가압류를 해제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2022. 4. 5.자 피고 답변서), ④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주)D의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지, (주)D의 사업 계속을 위하여 부득이 신규 자금을 융통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피고는 B로부터 (주)D의 주요 재산을 매각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B가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을 그 당시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앞서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물반환에 의한 원상회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2)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오연수, 판사 김태홍, 판사 정영훈

1) 2022. 9. 29.자 판결경정결정에 의하여 교체된 별지 기재 이유 부분을 말한다.

2) 제1심판결의 주문에 기재된 결론을 말한다(제1심판결은 주문에는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결론을,

판결경정을 통하여 교체한이유 부분에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